

갈남1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술제안서 평가기준(변경)

2023. 8.



삼척시

1. 개요

본 평가기준은 「갈남1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하수처리공법 선정에 대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목 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이 낮고, 설치·운영비 등이 저렴한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함.

나. 기한 내 제출한 공법보유사 기술제안서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다. 공법의 경제성에 대한 사전검토 실시

- 1)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기관평가 항목(보증수질, 운영비, 경제성 등)은 관리청(발주처)에서 검증 후 평가하고, 위원평가 항목은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 한 후, 기관평가와 위원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득한 업체를 최종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2)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분야의 고득점자로 결정하고 기술분야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경제성분야의 공사비,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보증 순서로 비용이 저가인 순위로 결정한다.
- 3) 참여업체가 5개사 이하일 경우에도 평가시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는 위원평가에서 제외되고 참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또한 기관평가시 참여업체 전체가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내용에 부적정하거나 1개 업체만 적정할 경우에도 비교평가 대상이 없어 평가가 불가하므로 평가취소 및 재공고한다.
- 4) 제안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는 검증 단계와 일부 공용시설(설비)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가감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제안 보증수질은

향후 법정수질로 관리되므로 무리한 보증수질 기준 제시는 허위사실 기재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라. 등급별 배분 및 배점기준

- 1) 위원평가는 평가 세부 사항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한다.
- 2) 여러 업체의 참여시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배분한다.
- 3)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 4)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 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구분 참여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3	-	1	1	(1)	-
4	-	1	2	1	-
5	1	1	2	1	-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4. 공법 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배점 기준	세부평가내용	비고
합 계		100		
기술 분야 (62)	소 계	62		
	1. 계획의 적정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수질특성을 고려한 물질수지 산정 및 설계 인자의 적정성 • 에너지사용 저감계획의 적정성 	위원평가
	2. 수질관리의 적정성	25		
	1)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	5	•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보증범위(목표수질) 적정성	기관평가
	2) 부하변동의 대응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하변동 및 수온변동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적정성 및 처리효율 저하시 대응성 • 유입부하 변동에 따른 에너지사용 효율화 계획 	위원평가
	3) 수질확보의 안정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성 • 공정운영에 소요되는 에너지사용량의 적정성 	위원평가
	3. 유지관리 용이성	14		
	1) 유지관리 용이성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관리시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의 용이성 • 공공하수도 에너지자립화정책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절감 	위원평가
	2) 기술지원	5	•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정도	위원평가
	3) 보증기간	1	• 보증기간	기관평가
	4. 가동의 적정성	11		
	1)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5	• 실제 가동중인 처리시설의 처리효율 및 수질상태 비교 평가	위원평가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5	• 실제 가동중인 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비교 평가	위원평가
	3) 신기술 보유 유무	1	• 신기술 보유 유무	기관평가
	5. 공법사의 적정성	2		기관평가
	1) 경영상태	1	•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평가	
2) 국내 적용실적	1	• 국내 적용실적에 대한 평가		
경제성 분야 (23)	소 계	23		
	6. 공법의 경제성	23		기관평가
	1) 공사비	10	• 공사비 분석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	
	2) 유지관리비	11	• 유지관리비 현가분석 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	
3) 유지관리비 보증	2	• 제안 유지관리비 초과시 초과금 보증여부 평가		
에너지 분야 (15)	소 계	15		
	7.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15		기관평가
	1) 에너지사용량	10	• 저에너지 공법 선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평가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5	• 제안된 에너지사용량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사용량 비율에 대한 비교 평가		

※ 위원평가 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다.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가항목	평가방법	감점기준	감점상한	
8. 감점사항				
감점 사항	1) 제안서 작성 관련	• 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0.2점	1점
		• 제안서 기준페이지(100page) 초과시	1페이지당 0.2점	1점
		• 제안서 규격, 지질 미준수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1점
		• 제안서 사진부착 기준 미준수시	1페이지당 0.2점	1점
		• 제안서 흑백작성 기준 미준수시	1페이지당 0.2점	1점
		• 용량계산서, 수리계산서, 공사비 산출근거,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미제출시 ※ 용량계산서, 물질수지도 제출 컴퓨터파일(Excel 등)에 수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0.5점 감점처리함.	1목록당 0.5점	2점
		•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하여 산출시	1건당 0.2점	2점
		• 최소 계열화 조건(2계열) 미충족시	2점	2점
		• 기술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산출근거 등 추가자료 제출요청에 불응할시	1회당 1.0점	5점
		• 상대평가용 기술제안서 및 부록에 제안하는 공법 및 업체와 관련된 내용(문자, 기호 등) 표기시	1페이지당 0.5점	5점
2) 제안서 제출업체 행위 관련	• 참가업체가 기술심의위원회에 사전설명시	5점	5점	
	•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공법제안사가 발표 및 질의/답변시 회사명, 성명, 공법명 등 특정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행위(구술, 발표자료 내에 포함 등)가 발생될 시	5점	5점	
3) 제안서의 신뢰성 관련	• 재검토 공사비의 초과비율 - 15% 초과 ~ 20% 이하 : 5점 감점 - 20% 초과 : 10점 감점			
4) 평가배제 또는 선정무효	• 기술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작성지침의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1. 계획의 적정성(10점, 위원평가)

- 수질분석을 통한 현장수질 특성이 반영된 처리공정 및 설계내용
 - 현장조사 및 현장수질 특성 등에 따른 종합적 설계 반영 내용
- 물질수지 산정 및 설계인자의 적정성
- 처리 및 수리계통의 효율성, 에너지사용 저감계획의 적정성
- 배점기준

점 수	수	우	미	양	가	비 고
10점	10.0	9.0	8.0	7.0	6.0	

2. 수질관리의 적정성(25점)

1) 보증수질의 적정성(5점, 기관평가)

-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보증수질로 평가
 - 각 수질항목별(BOD, TOC, SS, T-N, T-P 5개 항목)로 평가하여 합산(각 항목별 1점, 5개 항목 합계 5점 만점)
 - 계획수질, 고농도/저농도 ,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관련자료 제출
 - 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 평가기준 : 공법사에서 제시한 항목별 보증수질을 기준으로 제안공법들의 항목별 평균보증수질과 해당공법의 항목별 보증수질 비율로 절대평가
 - 보증수질 비율 = (해당공법의 보증수질 ÷ 제안공법들의 평균보증수질) × 100
 - ※ 1. 보증수질은 기술제안서 [첨부양식 2] 의 성능보증서상의 방류수질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평가
 - 2. 성능보증 협약서 제출 후 선정업체는 이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배점기준

점 수		보증수질 비율					비 고
		90% 미만	90%이상~100%미만	100%이상~110%미만	110%이상~120%미만	120% 이상	
5점	BOD	1.0	0.9	0.8	0.7	0.6	
	TOC	1.0	0.9	0.8	0.7	0.6	
	SS	1.0	0.9	0.8	0.7	0.6	
	T-N	1.0	0.9	0.8	0.7	0.6	
	T-P	1.0	0.9	0.8	0.7	0.6	

- ※ 1. BOD, TOC, SS, T-N, T-P 항목별로 평가하여 제안 공법별로 합산(합계:5점)
 2. 항목별 합산 점수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 부하변동의 대응성(10점, 위원평가)

- 수질, 수온 및 유량변동에 따른 대응성
 - 유입수의 수질 변동(고/저부하) 및 유량 변동(고/저유량)에, 수온 변동(동절기시, 환절기시)에 대한 운영계획
- 처리효율 저하 시 대응성, 에너지 사용 효율화 계획
 - 부하의 변동 및 저수온, 난분해성/독성물질 유입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 시에 대응 및 운영 계획, 유입부하 변동에 대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 계획
- 배점기준

점 수	수	우	미	양	가	비 고
10점	10.0	9.0	8.0	7.0	6.0	

3) 수질확보의 안정성(10점) : 위원평가(상대평가)

-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
-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성
- 공정운영에 소요되는 에너지사용량의 적정성

○ 배점기준

점 수	수	우	미	양	가	비 고
10점	10.0	9.0	8.0	7.0	6.0	

3. 유지관리 용이성(14점)

1) 유지관리 용이성(8점) : 위원평가(상대평가)

- 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방안
- 유지관리동선(근무자, 방문객, 작업차량, 하수찌꺼기 운반차량 등), 시설의 집약화, 악취 등에 대비한 시설배치의 적합성
- 단계별 시공을 고려한 유지관리의 용이성
- 금회 이전 신설공사시 기존시설의 무중단 운영방안
- 공공하수도 에너지자립화 정책에 따른 에너지사용 절감
- 배점기준

점 수	수	우	미	양	가	비 고
8점	8.0	7.2	6.4	5.6	4.8	

2) 기술지원(5점) : 위원평가(상대평가)

- 종합시운전시 기술지원 정도를 포함한 공법선정 이후의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 계획(정도)
- 배점기준

점 수	수	우	미	양	가	비 고
5점	5.0	4.5	4.0	3.5	3.0	

3) 보증기간(1점) : 기관평가(절대평가)

- 보증기간에 대한 절대평가

- 기술제안서 성능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
- 공법자재별 평균 품질보증기간(무상보증연한) 산정 예시
 - 공법자재 A : 무상보증연한 7년, 기자재비 1,000백만원
 - 공법자재 B : 무상보증연한 5년, 기자재비 500백만원
 - 공법자재별 평균 품질보증기간(무상보증연한)

$$= [(7년 \times 1,000백만원) + (5년 \times 500백만원)] / 1,500백만원 = 6.3년$$
- 공법자재별 품질보증기간(무상보증연한)이 다른 경우 각각의 기자재비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기자재비 산출근거(내역서, 견적서 등)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 기자재비는 조달수수료(1.07%)와 부가세(10%)를 포함한 금액 기준임.

○ 배점기준

점 수	15년 이상	12년이상 ~ 15년미만	9년이상 ~ 12년미만	6년이상 ~ 9년미만	3년이상 ~ 6년미만	비 고
1점	1.0	0.9	0.8	0.7	0.6	

4. 가동의 적정성(11점)

1)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5점) : 위원평가(상대평가)

- 가동 중인 공공 또는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최근 1년간 처리수질* 및 처리효율**로 상대평가

* 처리수질 : 평균수질, 최고수질, 최저수질 유입시로 구분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평균수질 기준으로 산출)

** 처리효율

- ① 신기술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 및 관련지자체, 민간위탁일 경우 관리장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
- ②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최고책임자(중앙관서의 장인 경우 운영관리조직 최고책임자)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
-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①항의 검사인증서 및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공문,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만 유효함.

- 정상가동실적 증명서 중 최근 1년 이상 가동 중인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 정상가동실적이 없고, 환경신기술 검증(유효기간내)으로 금회 공법선정에 참가한 공법 제안사 공법의 경우 신기술 검증서에 제시된 처리효율을 대상으로 평가

※ 정상가동실적 중 제출 가동기간(공고일 최근 1년)내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달인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정상가동실적 제출건 각각에 대해 해당 건별 발주청과 협약한 ‘기술사용협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를 제출하여야 함)

※ 정상가동실적 최근 1년 제출기간 : 2022. 5월 ~ 2023. 4월로 규정함.

○ 배점기준

점 수	수	우	미	양	가	비 고
5점	5.0	4.5	4.0	3.5	3.0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5점) : 위원평가(상대평가)

○ 가동중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로 상대평가

-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등은 탈수기로 자체처리한 경우와 슬러지를 외부반출한 경우를 구분할 것
-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전처리설비(가압부상조 등)가 있는 경우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등을 구분해 표기할 것.

※ 소규모의 경우 무인운전에 따른 순회점검회수 등에 따라 유지관리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항목으로 평가

○ 배점기준

점 수	수	우	미	양	가	비 고
5점	5.0	4.5	4.0	3.5	3.0	

3) 신기술 보유 유무(1점) : 기관평가(절대평가)

○ 제안 하수처리공법의 환경신기술 검증여부에 따라 평가

- 공법선정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공법에 한정

(본 항목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최종 선정된 공법사는 기술사용
협약 체결시 관련 특허<정상가동실적으로 참가시> 또는 환경신기술<환경신기술로 참가시>이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배점기준

구	분	점 수
환경신기술을 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모두 받은 경우		1.0
환경신기술을 인증서만 받은 경우		0.25
환경신기술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0.0

5. 공법사의 적정성(2점) : 기관평가(절대평가)

1) 경영상태(1점)

○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 신용도 평가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함.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신(최근)의 등급에 의함.

- 조달청 통보 근거자료 미첨부시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함.

※ 조달청 통보 근거자료 : 나라장터에 해당 공법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전체) 조회
화면을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가장 최신 평가등급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회화면을 캡처하여 기술제안서(부록)에 첨부하면 됨.

-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배점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점 수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0.9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0.9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0.8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0.8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7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7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6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0.6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5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0.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45

2) 국내 적용실적(1점)

- 국내에 적용된 공공 또는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정상가동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준공되어 운영중인 처리시설 및 발주자 확인을 받은 실적에 대해서만 검토/인정)
 - 정상가동실적 증명서 제출(공고문 참가자격의 용량기준 및 제출기간 참조할 것)
 - 정상가동실적 제출건 각각에 대해 해당 건별 발주청과 협약한 ‘기술사용협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건수로 인정됨.

○ 배점기준

점 수	3건 이상	2건	1건	0건	비 고
1점	1.0	0.8	0.6	0	

6. 공법의 경제성(23점) : 기관평가(절대평가)

1) 공사비(10점)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비 분석을 통한 평가
 - 도면(P&ID 포함),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관련자료 미제출시 감점 및 평가제외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 평가기준 :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술사용료 등 제안공사비 총액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비율 = (해당공법의 공사비 ÷ 제안공법들의 평균 공사비) × 100%

○ 배점기준

점 수	70%이상 ~ 100%미만	100%이상 ~ 110%미만	110%이상 ~ 120%미만	120%이상 ~ 130%미만	130%이상 ~ 70%미만
10점	10.0	9.0	8.0	7.0	6.0

※ 최저가로 인한 저급자재 사용 및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제안공법들의 평균 공사비의 70% 미만인 공법의 경우에는 최저 점수를 부여

2) 유지관리비(11점)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지관리비 분석을 통한 평가
- 평가기준 : 정상운전 단계에서 평가가 가능한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경상수선비, 대수선비, 기타의 20년간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 비율 = (해당공법의 유지관리비 ÷ 제안공법들의 평균 유지관리비) × 100%
- 배점기준

점 수	90%미만	90%이상 ~ 100%미만	100%이상 ~ 110%미만	110%이상 ~ 120%미만	120%이상
11점	11.0	9.9	8.8	7.7	6.6

3) 유지관리비 보증(2점)

- 성능보증확약서 상에 명기한 유지관리비 보증기간으로 평가
- 배점기준

점 수	보증기간 15년이상	보증기간 10년이상	보증기간 5년이상	보증기간 5년미만	보증기간 없음
2점	2.0	1.8	1.6	1.4	0.0

7. 에너지사용 저감계획(15점)

1) 에너지 사용량(10점, 기관평가)

- 하수처리시설내 에너지 사용시설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석 평가(제안공법 특성으로 에너지생산량이 있는 경우 사용량에서 감)
 - 비율 = (해당공법 에너지사용량 ÷ 제안공법 평균 에너지사용량) × 100

○ 배점기준

구 분	에너지 사용량				
	90%미만	90%이상 ~ 100%미만	100%이상 ~ 110%미만	110%이상 ~ 120%미만	120%이상
10점	10.0	9.0	8.0	7.0	6.0

※ 에너지사용량 검토항목이 유지관리비 항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로만 평가 가능.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5점, 기관평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6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비율을 평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대상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6호) 【별표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 적용
- 평가기준 : 전력비 산정시 공법사 공급기자재의 전력사용량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비율에 의해 평가
 - 비율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전력량 ÷ 공법사공급기자재 전력량) × 100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시 관련 근거자료 제출 (관련근거 미제출시 최저점 부여)
- 배점기준

구 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비율				
	80%이상	80%미만 ~ 60%이상	60%이상 ~ 40%미만	40%이상 ~ 20%미만	20%미만
5점	5.0	4.5	4.0	3.5	3.0

8. 감점사항

1) 제안서 작성 관련 감점기준

- 제안서 작성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점처리 기준을 명기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0점)
- 제안서 기준페이지(100page) 초과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0점)
 - ※ 제안서 해당페이지 미달시는 무방하며, 보고서 A3규격은 2페이지로 간주하고 표지, 목차, 평가조건표, 간지는 페이지수에 미포함하며, 페이지 숫자가 하단에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쇄내용이 전혀 없는 면은 페이지수에 미포함
- 제안서 규격, 지질 미준수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0점)
 - ※ 도서 크기 제한 규격의 허용오차 범위는 (±) 10mm임.
- 제안서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해서는 안되고 사진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준수시에는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0점)
-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칼라사용 금지), 위반시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0점)
- 용량계산서, 수리계산서, 공사비 산출근거,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미제출시 1목록당 0.5점 감점(감점상한 2.0점) ※ 용량계산서(물질수지도 포함)는 수식이 연결된 엑셀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시 0.5점 감점 처리함.
-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을 미준수하여 산출시 1건당 0.2점 감점(감점상한 2.0점)
- 최소 계열화 조건(2계열 이상) 미충족시 2.0점 감점
 -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된 최소 계열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제안서에 감점 조치됨.
- 기술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산출근거 등 추가자료 제출요청에 불응할시 1회당 1.0점(감점상한 5.0점)

- 상대평가용 기술제안서 및 부록에는 공법사가 제안하는 공법 및 업체와 관련된 어떠한 표기(문자, 기호 등)도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시 탈락처리
- ※ 상대평가용 서류에 표기가 금지되는 사항 : 공법명, 회사명, 대표자 및 회사
종업원 성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특허명 및 특허번호, 신기술명 및 신기술
번호, 회사로고, 특정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사진(그림, 이미지 포함) 등
- ※ 1차평가에서 감점처리하며, 만일 해당 제안서류가 2차평가 대상이 될 시에는
해당 감점처리된 부분들은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모두 블라
인드 처리하여 평가위원에게 배포함.

2) 제안서 제출업체 행위 관련 감점기준

- 업체가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을 하는 것은 업체의 물적, 인적 손실이 크고 공법
선정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점기준을 명기합니다.
 - 본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개최일(공법 기술제안서 평가일)
까지 기술제안 참여자 및 해당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여기서 ‘접촉’ 이란 SNS, 문자, E-Mail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
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5점을 감
점한다.
 -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평가위원
에게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심의에 참여한다.
 -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사업부서에서 조사하여,
해당공법에 감점 5점을 부가하며,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최종 평
가점수에 감점을 적용한다.
-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공법제안사가 발표 및 질의/답변시 회사명, 성명,
공법명 등 특정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행위(구술, 발표자료 내에 포함 등)가 발생
될 시에 감점 5점을 적용합니다.

3) 제안서 신뢰성 관련 감점기준

- 공법선정의 공정성 침해 예방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공사비가 공법사 제시 공사비 대비 15% 초과시 초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합니다.

- 초과비율 : $[(\text{재검토 공사비} - \text{제안 공사비}) / \text{제안 공사비}] \times 100\%$

- 15% 초과 ~ 20% 이하 : 5점 감점

- 20% 초과 : 10점 감점

4) 평가배제 또는 선정무효

-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